

신주 발행 공고

당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, 2017년 03월 1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8,000,000 주 (1 주당 액면가액 500 원)
2. 신주의 발행방법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
3. 신주의 발행가액: 할인율을 20 %로 하여 증권의 1 차 발행가액,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합니다(단,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, 1 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). 다만,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 165 조의 6(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) 및 "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" 제 5-15 조(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)에 의거하여 1 차발행가액과 2 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4. 신주의 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: 2017년 03월 29일
5. 신주의 배정방법:
 - 가. 구주주 청약: 신주배정기준일 18:00 현재,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이하 "구주주"라 함)에게 본 주식을 1 주당 0.47710145 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(단, 1 주 미만은 절사함)으로 하고,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- 나. 초과 청약: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및 명부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 청약(초과 청약 비율: 배정 신주 1 주당 0.2 주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. (단,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)
 - 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: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10%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(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합산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)에 배정하고,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5%로 하며, 나머지 90%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.
 - 라. 상기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, 초과 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(주)가 일반에게 공모하되,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(집합투자업자 포함)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
 - 마. 일반공모 청약 결과,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.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 전량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.
6. 청약일
 - 가. 구주주 및 초과청약: 2017년 05월 04일부터 2017년 05월 08일까지
 - 나. 일반공모: 2017년 05월 10일부터 2017년 05월 11일까지
7. 주금납입일: 2017년 05월 15일
8.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 - 가.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
 - 나. 신주인수권증서는 일괄예탁 방식으로 2017년 04월 17일부터 2017년 04월 21일까지 5 거래일간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임.
 - 다.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(주)로 함.
 - 라.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,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9. 청약증거금: 1 주당 발행가액 전액
10. 청약장소:
 - 가. 구주주 중 실질주주: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(주) 본 · 지점
 - 나. 구주주 중 명부주주: 유진투자증권(주) 본 · 지점
 - 다. 일반공모 청약자: 유진투자증권(주) 본 · 지점
11. 주금납입처: 기업은행 인사동지점
12. 배당기산일: 2017년 01월 01일
13. 기타사항
 - 가.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.
 - 나. 기타 신주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 - 다. 본 신주발행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1 조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신주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: 2017년 03월 29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17년 03월 30일부터 2017년 04월 03일까지

2017년 03월 10일

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 DM 빌딩 12층
㈜버추얼텍
대표이사 서지현

명의개서대리인
한국예탁결제원
사장 이병래